

大田直轄市駐車場에 對한 市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審查報告書

1991. 12.

内務委員會

目 次

1. 審査 經過	2
2. 提案說明要旨	2
3. 專門委員 檢討 要旨	3
4. 質疑 及 答辯 要旨	4
5. 討論 要旨	4
6. 審査 結果	4

大田直轄市駐車場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審查報告

1991年 12月 27日
內務委員會

1. 審查經過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者：財務局長)

가. 提案理由

- 民間投資에 의한 駐車場 建設을 推進하므로서 駐車難 解消를 위하여 關係法令에 의하여 設置義務敍이 設置한 駐車場에 대하여 取得稅, 登錄稅, 都市計劃稅, 消防共同施設稅를 課稅 免除 하였으나,
 - 課稅免除 其間이 '91年末로 滿了됨에 따라 同條例에 收入金額計算方法을 新設하여 一定期間 課稅免除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課稅免除 範圍를 調整하고자 함 (第 3條)
 - 從前 規定에는 收入金類의 適用基準이 곤란하고, 收入金額의 決算方法이 明示되지 않아 混亂이 起起되므로 收入金額의 適用基準에 있어 當該 土地價額을 適用하던것을 公示地價를 適用하고 收入金額의 計算 方法을 新設
- 適用時限을 延長하고자 함 (附則 第 ②項)
 - 從前에는 適用時限을 1991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延長하고자 함.

3. 專門委員 檢討 要旨(專門委員 : 安鍾贊)

本 改正條例案은 民間投資에 의한 駐車場 建設을 促進하고자 設置義務의 設置한 駐車場에 對한 課稅免除 條例가 '91年末로 時限滿了됨에 따라 課稅免除 對象을 調整하고 時限을 延長하여 地方稅法 第 9條의 規定에 의거 1991. 11. 21. 内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事案으로서

첫째 : 課稅免除 對象에 있어 駐車場의 年間收入金額을 當該 土地價額을 適用基準으로 함에 따라 混亂이 起起되므로 公示地價를 適用토록하고 年間駐車場의 收入金額 算出 方法을 新設하고(第 3條)

둘째 : 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 延長하려는 事案임.(附則 第 2項)

本案은 날로 急增하는 都心地內 駐車難을 解消키 위해 管內 民營駐車場에 대하여 收入金額 計算方法을 新設하여 一定期間 課稅免除코자 하는 事案으로써 이는 民間의 駐車場 建設을 活性化함은 물론 自動車 交通의 圓滑을 起하여 公衆의 便宜를 圖謀할 것으로 期待 되므로 改正案이 妥當하다고 思料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 省 略

5. 討論要旨 : 省 略

6. 審査結果 : 原案 可決

大田直轄市 駐車場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63

1991. 12. 16.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 가. 民間投資에 의한 駐車場建設을 促進하므로서 駐車難解消를 위하여 關係法令에 의하여 設置義務 없이 設置한 駐車場에 대하여 取得稅, 登錄稅, 都市計劃稅, 消防共同施設稅를 課稅免除하였으나,
- 나. 課稅免除其間의 '91年末로 滿了됨에 따라 同條例에 收入金額計算方法을 新設하여 一定其間 課稅免除하고자 함.

2. 主要骨子

가. 課稅免除範圍를 調整하고자 함 (第 3條)

- 從前 規定에는 收入金額의 適用基準이 곤란하고, 收入金額의 計算方法이 明示되지 않아 混亂이 賽起되므로 收入金額의 適用基準에 있어 當該 土地價額을 適用하던것을 公示地價를 適用하고 收入金額의 計算方法을 新設

나. 適用時限을 延長하고자 함 (附則 第 ③項)

- 從前에는 適用時限을 1991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1994年 12月 31日 까지로 延長고자 함.

3. 參 考 事 項

○ 駐車場法

- 第 12條 (路外駐車場의 設置) ① 都市計劃區域안에서의 路外駐車場은 市長·郡守가 이를 設置한다. 이 경우 駐車場 整備計劃이樹立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駐車場整備計劃에 의한 路外駐車場設置計劃에 따라야 한다.
② 第 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長·郡守외의 者가 都市計劃區域안에서 路外駐車場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路外駐車場의 構造를 變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地方稅法

- 第 7條 (公益等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 課稅)
①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第 9條 (課稅免除 等을 위한 條例) 第 7條 및 第 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 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정하여야 한다

○ 條例改正許可 : '91. 11. 21. (內務部長官)

○ 立 法 豫 告

- 基 間 : '91. 11. 23 ~ '91. 12. 12. (20日間)
- 方 法 : 揭示 公告 및 市 公報 揭載 ('91. 11. 28 第 74 號)
- 結 果 : 意見 없음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당해 토지가액의”를 “공시지가의”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간수입 금액은 과세기준 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일 까지)의 수입 금액으로 한다.
2.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일수)}} \times 365$$

3. 공시지가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

부칙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3조 (과세면제) ① (생략)</p> <p>② 주차전용 부동산과 노천주차장(연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u>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u>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영업 개시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p> <p>다만, 주차장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준공검사일로부터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차영업을 개시한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추징한다.</p> <p>〈 신설 〉</p>	<p>제 3조 (과세면제) ①(현행과 같음)</p> <p>②-----</p> <p>공시지가의 -----</p> <p>-----</p> <p>③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년도 5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등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일수)}} \times 365$</p> <p>3. 공시지가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부 칙 (조례 제2077호) ③ (<u>시행기간</u>)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1991년 12월 31일까지</u> 시행한다.</p>	<p>부 칙 (조례 제2077호) ③ (<u>적용시한</u>) ----- -----. <u>1994년 12월 31일 까지</u> -----</p>